

영등포구의회
제175회 임시회

『경부선[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] 지하화 추진
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6. 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경부선[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]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12호로 2013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 ~ 당정)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
6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
하였으나 용산구가 참여함에 따라 관련 규약안을 개정하고 구의회
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됨.

3. 주요내용

가. 규약 명칭 변경(안 제2조)

- 현행 : 경부선(국철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 협의회
- 변경 : 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 지하화 추진 협의회

나. 협의회 규약기관 확대(안 제4조)

- 현행 : 6개 지자체(동작, 영등포, 구로, 금천, 안양, 군포)
- 변경 : 7개 지자체(용산, 동작, 영등포, 구로, 금천, 안양, 군포)

다. 사업구간 확대(안 제10조)

- 현행 : 노량진 ~ 당정역 ⇒ 변경 : 서울역 ~ 당정역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 152조, 제158조

나. 예산조치 : 2013년 예산 74,730천원 반영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규약안은 당초 경부선(국철1호선 노량진 ~ 당정) 지하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체결하였으나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7개 단체로 확대되는 등 규약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6개 자치단체에서 용산구가 추가된 7개 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약 명칭이 경부선(서울역~당정역) 지하화 추진 협의회로 변경되고, 사업구간 또한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함.

- 2012. 5. 3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(국철 1호선-노량진~당정)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2012. 9. 17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·의결 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고시됨.

이번 개정규약안은 용산구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관 련 법 령

■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>

제158조(협의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